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-140 호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6년 10월 30일

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

1. 조 례 명 : 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2. 제안이유

ㅇ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입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

3. 주요내용

가.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을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으로 갈음하는 규정 삭제(안 제4조)

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26년 11월 04일

나. 제출사항

-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-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제 출 처 :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

- 주소 : (30151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

- FAX : (044) 300-7219 / E-mail : hocandy@korea.kr

라. 문 의 처 : (044) 300-7313

붙임 :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1부.

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입양문화를”을 “입양문화가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가족의 형태”를 “가족형태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노력하여야”를 각각 “노력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협조하여야”를 “협조해야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수립·시행하여야”를 “수립·시행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제8조 중 “노력하여야”를 “노력해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의 입양인식을 개선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 입양문화가 ---------- 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반편견 입양교육”이란 생명의 소중함, 가족의 형태의 다양함 및 입양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입양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. 2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----- ----------. 1. ---------- ------- 가족형태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. 2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책무)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·재정	제3조(책무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노력해야 -------. ② ----------

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---------- 노력해야 ----.
③ 학교의 장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 협조해야 ------.
제4조(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)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」 제5조에 따른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.	제4조(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수립·시행해야 ----. <단서 삭제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8조(협력체계 구축) 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노력해야 -------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「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」

제6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, 입양아동에게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,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,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
2.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3.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
4.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
5.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

제공

6.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 및 시행

7.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

8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

⑤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 상호동의 및 개인정보보호 원칙하에 양자가 된 사람과 친생가족 간의 만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[붙임 2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4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유 인 호

[붙임 3]

현 행 조 례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 4. 20.] [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960호, 2022. 4. 20., 일부개정]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(유초등교육과), 044-320-2121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의 입양인식을 개선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22.2.21.>

1. “반편견 입양교육”이란 생명의 소중함, 가족의 형태의 다양함 및 입양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입양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.

2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학교의 장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신설 2022.4.20.>

[제목개정 2022.4.20.]

제4조(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)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」 제5조에 따른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.

1. 추진목표 및 방향
2. 예산 확보 방안
3.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
4.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사업추진)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22.4.20.>

1. 자료의 개발·보급 지원
2.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
3. 협력 기관 연계망 구축
4. 교원연수
5. 반편견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홍보
6.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교원연수)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7조(위탁·위촉 등) ①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반편견 입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4.20.]

[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<2022.4.20.>]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제7조에서 이동 <2022.4.20.>]

[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<2022.4.20.>]

제9조(예산지원)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,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[제8조에서 이동 <2022.4.20.>]

제10조(표창)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·단체에 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4.20.]

부칙 <제1960호,2022.4.2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